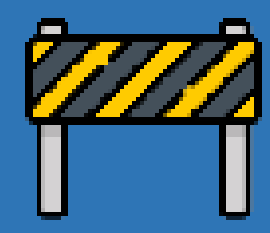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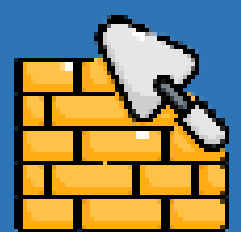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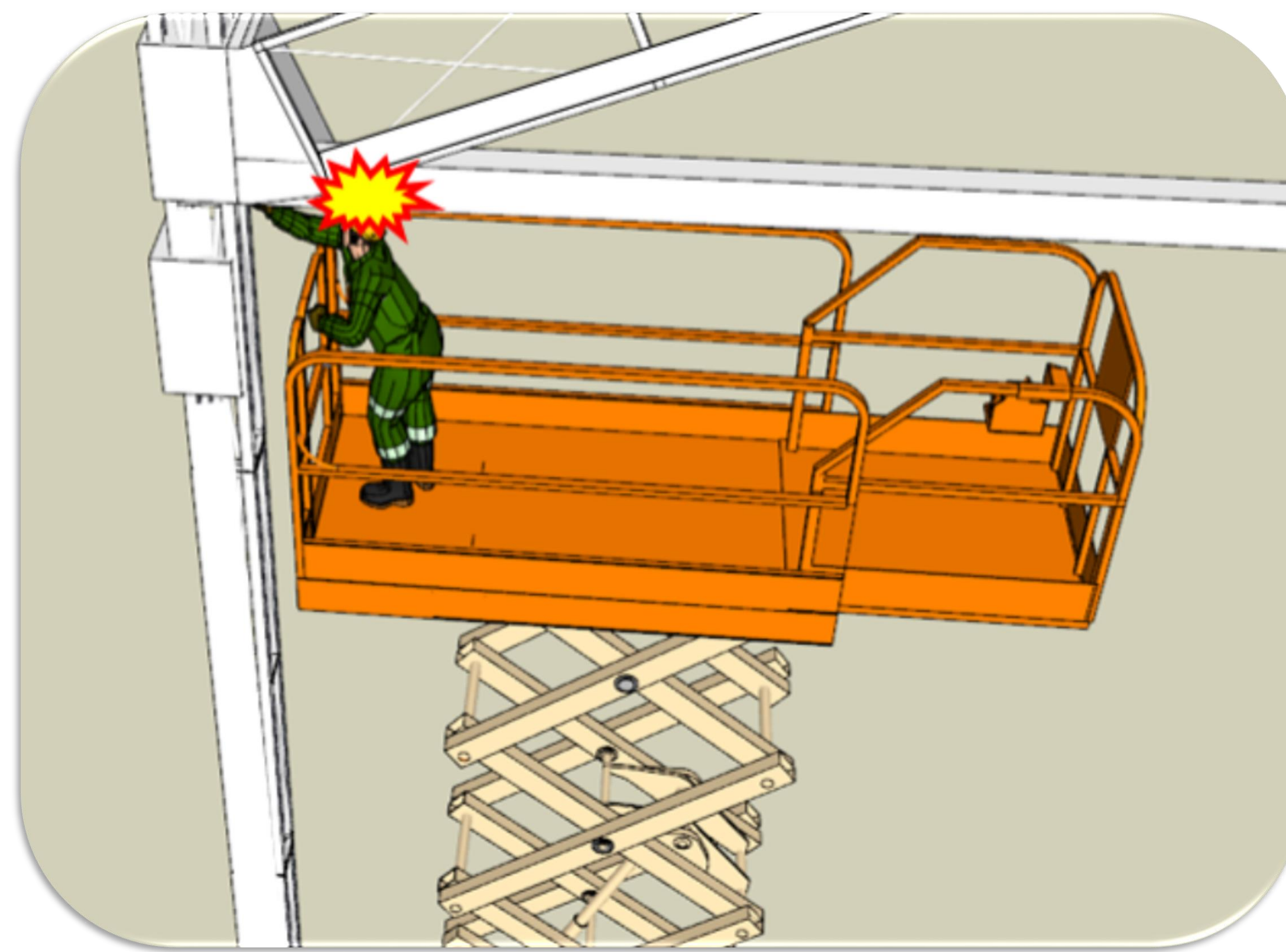
고소 작업대 상승 중 구조물에 끼임
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끼임	사망 1명	만34세	일용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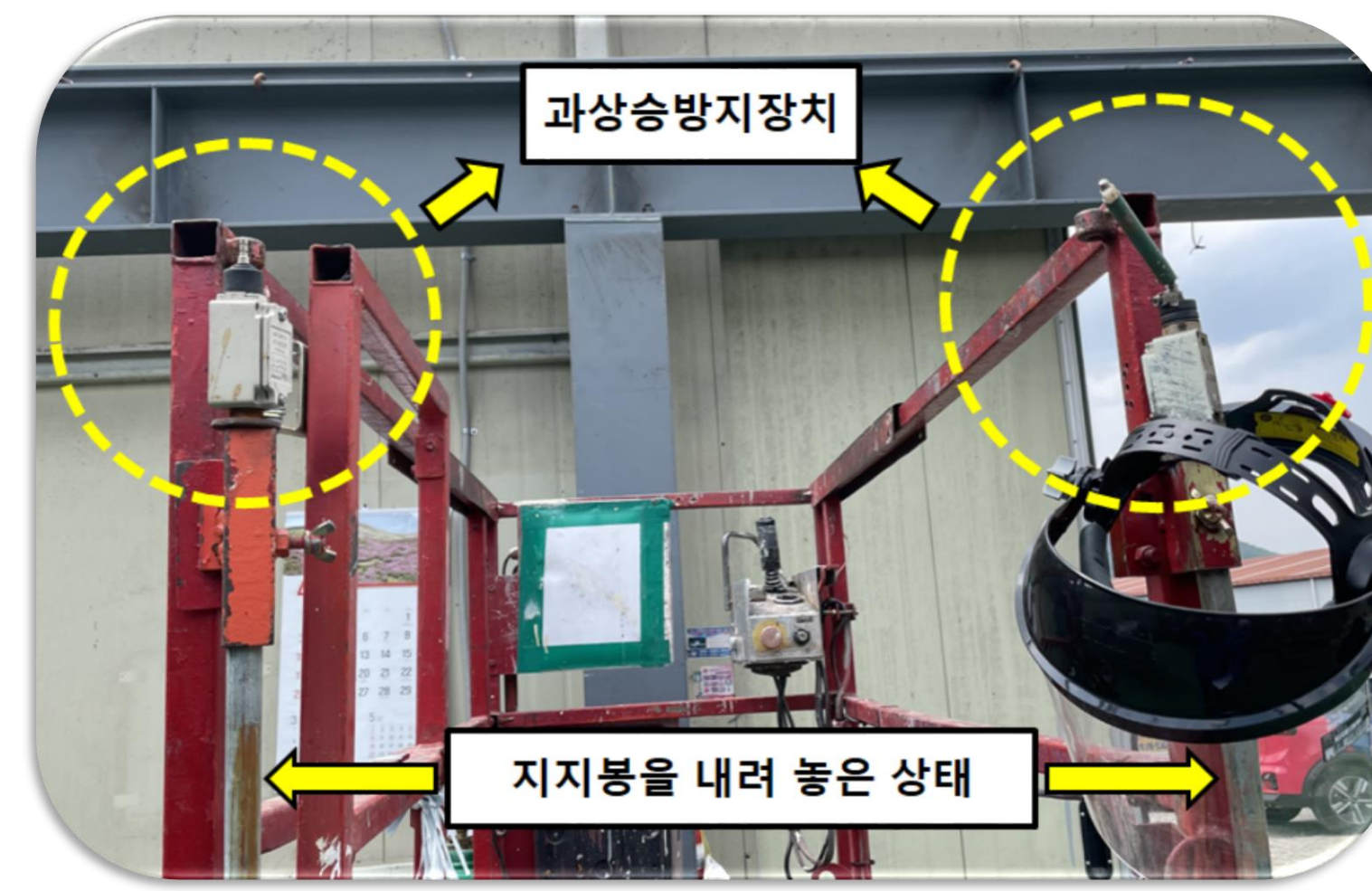
2022. 05.00(일) 00:00경 밀양시 소재 〇〇공장 지붕교체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작업을 위해 시저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케이지 상승 중, 난간대와 지붕 구조물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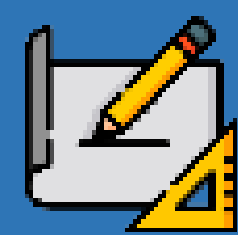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정상) 유사 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이 가능토록 적정 높이 및 동작여부 확인
- (비정상) 작업 편의를 위한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높이를 낮추어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



<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상태 불량 >


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방호장치 설치상태 불량) 고소작업대 상승 시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과상승방지장치를 부적정한 상태로 설치하여 과상승 시 작동하지 않음

2 기여요인

- (작업계획서 미작성)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끼임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



예방대책

1 방호장치의 적정 설치 및 상태유지(점검)

-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 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
- 또한 작업편의를 위해 임의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높이를 낮추지 않고,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적정한 상태인지 점검·확인 하여야 함

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

- 고소작업대 사용 시 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